

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조례제정 후 수년간 개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인근지역 동종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타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(안 제11조)

-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->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

나. 장례식장 시설사용 요금 인상

- 분향실, 안치실 : 32,000원 -> 53,000원

- 접객실 : 96,000원 -> 160,000원

- 염습료 : 80,000원 -> 130,000원

- 특실(접객실) 부분 신설 : 200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0. 11. 3. ~ 2020. 11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실-13354호(2020.10.27.)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(기획실-13354호(2020.10.27.))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(복지과-63173(2020.10.29.))

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및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 :원)

시설명	분향실	접객실	안치실	염습료	특실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	1일
평창장례식장	53,000	160,000	53,000	130,000	200,000
진부장례식장	53,000	160,000	53,000	130,000	(접객실)

※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<u>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</u>」 및 「<u>평창군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「<u>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</u>」 및 「<u>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</u>」----- -----.</p>

현행

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 :원)

시설명	분향실	접객실	안치실	염습료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
평창장례식장	32,000	96,000	32,000	80,000
진부장례식장	32,000	96,000	32,000	80,000

※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.

개정

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 :원)

시설명	분향실	접객실	안치실	염습료	특실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	1일
평창장례식장	53,000	160,000	53,000	130,000	200,000
진부장례식장	53,000	160,000	53,000	130,000	(접객실)

※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.

[붙임]

관계법령 발췌

장사등에 관한 법률

제28조의2(공설장례식장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(이하 “장례식장”이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9조(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) ③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,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,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12시부터 다음날 오전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, 연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[붙임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비용 추계결과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(제3조제5항 중 제1호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장 김 복 재
연락처	(033) 330 - 2309